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

국가개요

- 1. 국명 : 우크라이나(Ukraine)
- 2. 수도 : 키예프(Kiev, 290만명)
- 3. 인구·면적 : 4,413만명(2020년), 603,550km(한반도의 약 2.7배)
- 4. 공용어 : 우크라이나어(러시아어도 널리 사용)
- 5. 1인당 GDP: 3,726달러(2020년)
- 6. 독립일 : 1991. 8. 24.(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)
- 7. 정부형태 및 의회 : 이원집정부제, 단원제
- 1. 명칭 : 헌법재판소
 - 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Ukraine
- 2. 연혁
 - O 1996. 6. 28. 헌법 제정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
 - 1996. 10. 16. 헌법재판소 설립
 - O 1997. 5. 13. 헌법재판소 첫 결정 선고
 - 2017. 10. 3. 헌법재판소법 개정
 - 2019. 2. 7. 헌법 개정
- 3. 구성(헌법 제148조, 제149¹조, 헌법재판소법 제33조, 제34조)
 - O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한 1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
 - O 재판관은 대통령, 국회, 법관회의(Congress of Judges)에서 각 6인씩 임명
 - O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, 정년은 70세
 - O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(3년 단임)

O 재판관 자격 : 고등법학교육을 이수하고 법조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로 서, 우크라이나어를 구사할 수 있는 40세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

4. 권한(헌법 제150조, 제151조, 제151¹조)

- O 대통령, 국회의원 45인 이상, 대법원, 국회 인권대표(Authorised Human Rights Representative), 크리미아 공화국 국회의 제청에 의해, 국회가 제정한 법률 및 규칙, 대통령령, 내각령 및 크리미아 자치공화국 국회 명령의 위헌 여부 심판
- O 대통령, 국회의원 45인 이상, 대법원, 국회 인권대표(Authorized Human Rights Representative), 크리미아 공화국 국회의 제청에 의해, 우크라이나 헌법 해석
- O 대통령, 국회의원 45인 이상 또는 내각의 청원에 따라 발효 중이거나,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제출된 국제조약의 위현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
- 대통령, 국회의원 45인 이상의 청원에 따라, 국민 발의에 의해 국민 투표 부의가 제안된 사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
- 국회 청원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조사 및 심의 과정의 헌법 절차 준 수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
- O 법원의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,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(단, 보충성 원칙이 적용됨)

5. 심리 및 결정

○ 전원재판부(Grand Chamber)는 법률 및 명령의 위헌 여부 심판, 헌법 해석, 국제조약의 위헌 여부, 국민 발의에 의해 국민투표 부의가 제안된 사안의 위헌 여부,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 절차 준수 여부, 헌법 개정안의 현행헌법 제157조1) 및 제158조2) 위반 여부, 크리미아 자치공화국 국회의 우크라이나 헌법 및 법령 위반 여부, 크리미아 자치공화국 행위와 명령의 우크라이나 헌법 및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(헌법재판소법 제35조)

¹⁾ 헌법 개정안의 내용이 인권, 시민권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이나 독립성에 위해가 되는 방향일 경우 헌법은 개정되지 아니한다. 계엄법이나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도 개정되지 아니한다.

²⁾ 헌법 개정 절차와 국회 임기 중 같은 조항을 2번 개정할 수 없음을 규정

- 평의회(Senate)는 원칙적으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, 재판관 총 인원이 18인 미만일 경우 평의회는 최소 6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됨. 헌법소원 심판을 담당(헌법재판소법 제36조)
 - -평의회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인해 헌법 해석이 필요할 경우, 혹은 평의회의 결정이 법원의 기존 법률 의견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의회는 전원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회부할 수 있음(헌법재판소법 제68조)
- 평의회 내에는 6개의 위원회(Board)가 있음. 각 위원회는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사전심사를 담당(헌법재판소법 제37조)
- 결정은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, 평의회나 전원재판부가 사안이 시급하다고 선언한 경우 1개월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함(헌법재판소법 제75조)
-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은 결정일로부터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위헌 결정에서 효력 정지 시점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부터 효력 정지 (헌법 제152조)

6. 기타사항

○ 자연인이나 법인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이나 국가 행위로 인해 받은 물질적, 도덕적 피해는 법률에 따라 보상(헌법 제152조)

7. 연락처

O 주소: 14, Zhylianska Str.,

Kyiv 01033, Ukraine

○ 전화번호 : +38044 289 05 53

O 이메일 : idep@ccu.gov.ua

O 홈페이지: http://www.ccu.gov.ua

※ 출처 : 우크라이나 헌법

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법

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

(2021. 7. 작성)